

LOTTE
SHOPPING

투명경영 위원회 규정



투명경영 위원회 규정 [제정 : 2012. 6. 28, 최종개정 : 2019. 6. 13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롯데쇼핑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투명경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권한사항) ① 위원회는 본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내용,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기준,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부의 안건 외의 광고, 시스템통합, 건설, 물류 분야의 계열회사간 내부 거래 현황 및 준법경영,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이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부서는 상당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위원회는 요청할 주요내용·자료범위 등 세부사항을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검토하여, 법령 또는 사규의 위반사실이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, 그 위반사유의 중대성, 회사에 미치는 영향, 개선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, 거래조건의 수정, 거래의 중단,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, 위반사실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 등 필요한 시정 및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위원이 임기 만료,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될 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하지 아니한 사외 이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선임하고,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제2항에 의한 구성을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, 사임 등으로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, 의무가 있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한다. 단, 초대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,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제4조 제3항은 위원장의 임기에 준용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소집권자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등의 경우에는 제5조 제4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직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의안제출)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3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9조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10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열 회사와 광고, 시스템통합, 건설, 물류 분야에 관하여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의 계약 체결하는 경우
2. 비등기임원 등 거래(비등기임원 본인 또는 본인의 친인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)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
3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
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의사록) 간사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(보고)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칙

제14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준법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5조(규정의 개폐)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다만 법령의 개정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용어변경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. 6. 28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 ① 본 규정은 2017. 6. 8.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② 본 규정은 2018. 1.1.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③ 본 규정은 2019. 6.13.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